

■ 치과 칼럼

### 치아 마모의 증상과 원인

치아의 마모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치아의 제일 바깥은 에나멜 또는 상아질이라 불리는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조직은 외부적 또는 어떤 화학적 데미지로부터 치아를 보호합니다. 이 조직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화학물질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에나멜은 우리 치아 조직 중에서 제일 마모나 손상이 오기 쉬운데, 이처럼 에나멜이 손상되는 현상을 enamel erosion (에나멜 침식) 이라고 합니다. 에나멜 침식이 일어나면 음식이나 음료의 온도나 맛, 또는 질감으로 인한 시립 증상, 치아 깨짐이나 틈새 발생, 착색 또는 컵 모양의 치아의 파임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에나멜 침식을 방지할 경우, 치아가 누렇게 변하거나 심한 시립, 치아의 끝 부분이 거칠어 지고 치아의 부식, 그리고 치아의 색이 투명해 보이게 되고, 치아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에나멜 침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는 산(acid)이나 설탕이 많이 함유돼 있는 음식이나 드링크, 예를 들어 소다나 에너지 드링크 또는 과일 주스 등이 있습니다. 또 치아에 대한 위로부터의 물리적 힘에 의한 마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갈이 (teeth grinding), 식도성 역류, 당뇨로 인한 구강건조증 또는 거식증으로 인한 위산 역류 등이 있습니다.

에나멜 침식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제일 손쉽고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tooth bonding (치아 본딩)으로, 치아 색의 레진을 특수한 방법으로 마모된 자리에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고 어떤 경우는 지속적으로 레진이 떨어져서 자주

내원을 하게 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때운 곳이 떨어지거나 마모가 크고 깊은 경우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씌워 치아의 부식과 마모를 보호하게 합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들 중에 제일 쉬운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이미 에나멜 침식이 있어도 우리가 일상생활 중 무의식 중에 하는 버릇들을 신경 써서 고쳐서 더 이상의 침식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청량음료나 주스 대신 물을 마시고, 소다를 마시게 되는 경우에도 입안에 넣고 돌리지 말고 빨대를 사용해 음료가 치아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스낵을 자주 먹어도 입안의 산(acid) 분비가 많아져 에나멜 침식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산기가 많은 음식을 섭취 후엔 물이나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먼저 헹구고 칫솔질은 조금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녹차나 홍차도 입안의 산성 상태를 중성화 시켜서 에나멜 침식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소 성분이 함유된 치약과 구강청결제의 사용으로 마치 보호막처럼 치아의 에나멜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거의 모든 치약들이 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가 될 수 있듯이 에나멜 침식에 대한 예방과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우리의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리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 601 A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불법 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관계로 영주권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최근 601A 면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1. 신청대상자

먼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경우입니다. 이민국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 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으나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사람들 중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을 제외한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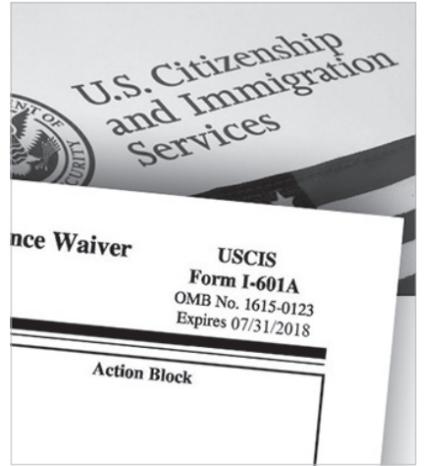
#### 2. 신청 자격 요건

1)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지닌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대상자들이 중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지닌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60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이미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승인 받은 해당 이민청원서의 종류는 가족이민(I-130)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취업이민(I-140)과 종교이민(I-360) 등



의 이민 청원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I-601A waiver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종교이민(I-360) 등의 이민청원서의 승인은 받았으나 밀입국을 했거나 또는 비자 기간을 어겨 현재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3) 이민청원서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민청원서의 승인만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 청원에 우선일자가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National Visa Center에서 영주권 문호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라는 편지를 받고 비자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이 있어야 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 고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